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3200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32002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1 선고 2021가소11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김길수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 항소인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변론 종결2022. 4. 20.

판결 선고2022. 6. 2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1. 선고 2021가소11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6,740원 및 이에 대한 2021. 2. 9.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
일시	2020. 8. 12. 11:56경	
사고 장소	포항시 남구 철강로41번길 18 수정세탁소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사고 요지	원고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리비	6,322,470원	
보험금지급액	3,793,4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대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소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대로를 진행하는 원고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70이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부담금은 1,896,740원(= 6,322,470 × 30%, 원 단위 버림)이다.

2) 원고는 수리비 6,322,470원 중 D위원회의 원고 과실비율 60%에 따른 부담금 3,793,480원(= 6,322,470 × 60%, 원 단위 버림)을 피고에게 우선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과실비율 30%에 따른 원고 부담금과의 차액인 1,896,740원(= 위 3,793,480원 - 위 1,896,74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통행우선권이 인정될 정도의 대로라고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차량이 피고차량과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 도로에서 주행하는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50:50 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그러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

2)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가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차량 통행 도로의 폭이 피고차량 통행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교차로의 경우 통상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느 진행 차로의 차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는지를 그 즉시 판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피고차량이 우측도로의 차인 원고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지만, 동시 진입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현저하진 않으나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5호증), 충돌 부위 및 도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현저하게 선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진입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차량 또한 피고차량이 비교적 저속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만연히 계속하여 진행방향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4) 결국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면서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부담금 3,793,480원과 앞서 인정한 원고 과실비율 50%에 따른 원고 부담금과의 차액인 632,245원[= 위 3,793,480원 - 3,161,235원(= 6,322,470 × 50%, 원 단위 버림)]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32,245원 및 이에 대한 D위원회에 따른 부담금 지급

다음 날인 2021.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이나현

판사안정현